

'주택대출 혼선' 빛은 은행권, 대출 재개

대출 약정서 '특약 기재' 방식으로 주담대 취급 금융당국, 이번주 중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전격 시행된 이후 세부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은 은행권이 18일 중단했던 대출 취급을 일부 재개한다.

전날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긴급 배포한 '실무 FAQ'를 각 시중 은행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 즉각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놓고 지속되는 혼란에 20~21일 중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의 지침대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만들어 대출 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집시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취

급한다. 은행들이 추가 약정서를 새로 마련하려면 내부 준비부터 검토, 금융감독원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당국이 우선적으로 마련한 조치다.

은행권은 지난 14일 대책 시행 이후 추가 약정서가 필요한 주택이상의 생활자금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등을 중단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권 공통의 추가약정서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에게 대출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전날 나온 지침에 따라 내부 특약을 만들어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르면 이날 오후 중 특약문구

확정 등을 거쳐 각 지점에 전달하고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에 맞춰 1억원 한도를 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정상 취급된다.

은행권 지침에 나온 예시를 보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 내역을 직접 기재한 다음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액 전액 상환을 물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라고 약정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다만 1억원 한도를 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추가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결과는 감독당국에도 보고된다.

이번 조치에도 일선의 혼란이 계속될 여지는 남아있다.

은행에서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때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대출 예외규정으로 워낙 다양한 대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대출 취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세부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이번 주중 추가로 (지침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중소기업부 광주전남청, 현장소통간담회 영광매일시장서 전라남도상인연합회와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17일 11시 영광매일시장에서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조성준 영광터미널시장 회장, 이분남 영광고추축화시장 회장, 봉태희 영광매일시장 전문위원 등과 함께 우수맛집을 탐방하고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내수침체 등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극복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지속적인 매출 하락에 따른 점포운영의 어려움을 강력하게 토로하면서, 주차장 증설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광주·전남청은 지역 공공기관에 온누리 상품권 활용 및 전통시장 장보기 협조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추석맞이 릴레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매일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전통시장 먹

거리 탐방**추진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령층에 동참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주시 시장의 매출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 상인들도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서 살거리뿐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형 청장은 "영광골비는 영광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며 "골비는 세포노화를 막고 면역체계를 증진시켜주며, 혈압을 낮추는 칼륨함량이 높아 고혈압 환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니 추석선물로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하였다.

서은홍 기자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전월세보증금 年 1.2%로 대출

국토부, 청년일자리 후속조치

정부가 중소기업·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8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제도에서는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 폭을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기업·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안채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관리해 중소기업 퇴직 또는 청년창업기업 후·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비담보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율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는 일반 비담보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말 대출한도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이 해결제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도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앞두고 갈치·조기 가격하향 추석을 앞두고 갈치, 조기 등 추석 성수 수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갈치가 판매되고 있다.

국세청 "종교인소득,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

앞으로 종교단체들이 종교인소득을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은 자동 계산된다. 신고 완료 후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간편하게 지급명세서(기타소득)만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서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때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구분된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이 아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